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창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5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1월 21일
발 의 자: 김창원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기대, 김재형, 김정태,
김제리, 김태수, 박기열,
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
송명화, 이병도, 전석기,
최 선, 최웅식, 홍성룡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육안점검'을 '맨눈점검'으로 함(안 제49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.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4항 중 “육안점검”을 “맨눈점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~ ③ 생략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<u>육안점검</u>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6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.</p>	<p>제49조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<u>맨눈점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